

감 사 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과세표준액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소 관 기 관 하남시 등 [별표 1] 기재 8개 기관

조 치 기 관 하남시 등 [별표 1] 8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하남시 등 [별표 1] 기재 8개 기관은 「지방세법」 제10조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⁶¹⁾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장부⁶²⁾에 의하여 신고

6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함

6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액⁶³⁾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부동산 연부취득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하남시는 주식회사 ●●이 2017. 1. 25. ㄱ 공주택지구에 있는 주상복합주택 용도의 건설용지를 연부계약으로 취득하면서 소요된 차입금 245,657,283,560원에 대한 이자 계 4,230,956,485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하여 취득세 등 계 234,435,570원을 누락하였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고, 춘천시의 경우 ■■■ 주식회사가 강원도와 2013. 12. 11.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⁶⁴⁾하고 2015. 1. 28.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면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 24,180,776,000원과 2021. 6. 30.까지 분납할 잔금(11,945,560,000원)에 대한 이자 계 2,697,078,35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하여 취득세 등 계 141,741,090원을 누락하였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을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법인장부로 규정

63)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금액, 세금계산서에 의해 증명되는 금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합계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

64) 2014년 2월(날짜 미상) 및 2014. 12. 24. 변경계약 체결

위 두 사례를 포함하여 [별표 2] “부동산 취득 소요 차입금 이자 과세표준 누락으로 취득세 등 부족징수 명세”와 같이 7개 업체가 차입금 이자 합계 13,071,088,919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는데도 하남시와 춘천시는 이를 그대로 두어 취득세 등 계 710,625,20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나. 원인자부담금 등 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감사원 감사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ㄱ 공공주택지구의 지목변경(총사업면적 중 기존 대지면적을 제외한 면적: 4,954,735㎡, 기존 대지면적: 507,954㎡, 총사업면적: 5,462,689㎡)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공사가 2013. 8. 28. 취득한 63,708㎡에 대하여 신고한 취득세 과세대상 사업비 646,143,651,060원에 취득일 이전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생태계보전협력금⁶⁵⁾, 상수도원인자부담금⁶⁶⁾, 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⁶⁷⁾ 등 부담금 계 155,010,206,930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정당한 취득가액인 8,474,564,290원보다 938,990,930원 적은 7,535,573,360원으로 신고하는 등 [별표 3] “ㄱ 공공주택지구 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으로 취득세 등 부족 징수 현황”과 같이 토지 지목변경을 위하여 투입된 부담금 계 226,408,206,930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함으로써 취득세 과세표준 13,266,843,688원을 누락하였는데도 하남시는 이를 그대로 두어 취득세 등 계 235,339,40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다. 개인 건축주가 건설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6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66) 「수도법」 제71조 제1항

67)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감사원 감사기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5개 자치구⁶⁸⁾가 2014. 1. 1.부터 2018. 2. 28.까지 사용승인한 연면적 661㎡ 이상의 건축물 중 개인 건축주가 발주하여 법인 건설업자가 시공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중 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인 783건의 내역을 제출받아 건설업자의 법인장부상 기재된 도급금액 등과 대조하였다.

그 결과 건축주 S이 2015. 11.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1필지에 신축한 ㄱ빌딩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2013. 11. 8.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T)와 계약금액 6,138,000,000원(공급가액⁶⁹⁾ 5,580,000,000원)으로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계약서와 법인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2015. 10. 31. 계약금액을 8,058,600,000원(공급가액 7,326,000,000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920,600,000원(공급가액 1,746,000,000원)을 추가 증액하였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신고하는 등 [별표 4] “개인 건축주 취득세 등 부족 징수 현황”과 같이 91건의 건축주가 계 22,505,276,091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는데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이를 그대로 두어 취득세 등 계 916,519,450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감사원 감사기간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U)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축한 ㄴ [총연면적 32,046.3㎡,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판매시설(상점), 제1·2종 근린생활시

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69)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설]에 대하여 2017. 10. 25. 취득세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취득가액 (35,763,977,953원) 중 도시형생활주택 부분은 누락하고 상가 부분(취득가액 18,465,891,082원)만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⁷⁰⁾ 583,522,150원(본세 517,044,950원, 농어촌특별세 36,931,780원, 지방교육세 29,545,420원)만을 취득세로 신고받았으며, 주식회사 ▶▶은 같은 해 10. 30.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업체가 취득한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별표 5] “주식회사 ▶▶ 추가납부 세액”과 같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17,298,086,871원(도시형생활주택 부분) 과소 신고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등 계 583,038,220원(2018. 5. 18. 기준)을 징수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하남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취득세 신고서 접수 시 원인자부담금 등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춘천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취득세 등을 2018년 7월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수시분으로 모두 부과하였고, 매년 개인 건축주의 신축 건

70) 2017. 10. 24. 주식회사 ▶▶이 B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서류 중 ‘건축물 신축 자진신고 내역’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부분도 비용 및 신고가액으로 적시하고 있음

축물 취득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득세 세원 누락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취득세 과표를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취득세 1억 원 이상)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검증하여 취득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하남시가 2018. 6. 7. 및 같은 해 6. 12. 지방세과 세예고를 통지하는 등 부과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하남시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춘천시가 2018. 5. 17. 지방세 과세예고를 통지하는 등 부과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춘천시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5개 자치구⁷¹⁾가 부족 징수된 취득세 등을 2018년 수시분으로 부과하는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5개 자치구의 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7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감사원 감사 이후인 2018. 6. 8. 주식회사 ▶▶으로부터 취득세 부족 징수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 (586,263,970원)⁷²⁾받아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72) 감사원 감사 마지막 날인 2018. 5. 18.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족 징수액은 583,038,220원이었으나, 납세의무자(주식회사 ▶▶)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2018. 6. 8. 기준으로는 당초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증가하여 총납부금액이 증가하였음

[별표 1]

과세표준액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명세

(단위: 원)

연번	기관명	유형	부족 징수액
계		4개 유형	2,448,748,020
1	하남시	소계	804,223,510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	568,884,110
		원인자부담금등 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235,339,400
2	춘천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	141,741,090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 건축주가 건설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245,195,740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 건축주가 건설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170,653,570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 건축주가 건설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113,902,730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 건축주가 건설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213,991,410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 건축주가 건설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172,776,000
8	세종특별자치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583,038,22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부동산 취득 소요 차입금이자 과세표준 누락으로 취득세 등 부족 징수 명세

(단위: 원)

기관명	납부의무자	과세물건(면적)	당초 신고 과세표준	누락 차입금이자	정당 과세표준	부족 징수 취득세 등 ^{주)}
하남시	주식회사 ●●	- 크택지개발지구 주상복합주택용지 (36,987㎡)	126,494,203,008	17,558,219	126,511,761,227	1,045,790
			82,168,195,900	4,230,956,485	86,399,152,385	234,435,570
	주식회사 △△건설	- -보금자리주택지구용지(12,020.67㎡)	2,071,994,260	251,767,716	2,323,761,976	13,342,300
			24,312,942,253	54,878,837	24,367,821,090	2,887,040
	- 개발주식회사	- -택지개발지구용지A3-1 (35,787㎡)	16,354,659,000	2,495,765	16,357,154,765	154,140
			24,532,431,000	464,001,879	24,996,432,879	27,477,410
			24,531,900,000	872,423,253	25,404,323,253	49,472,300
			24,531,900,000	1,288,322,971	25,820,223,971	69,823,890
			24,531,900,000	1,694,871,384	26,226,771,384	87,597,020
	- 개발주식회사	- 크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용지 (18,339㎡)	20,408,102,610	466,025,205	20,874,127,815	26,446,070
			115,645,469,980	537,139,726	116,182,609,656	29,228,940
	-주식회사	- 크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용지(7,252㎡)	6,842,317,320	153,740,274	6,996,057,594	8,722,640
			38,492,519,690	178,126,027	38,670,645,717	9,692,890
	주식회사 □□건설	- 외 2필지 -보금자리주택지구용지(13,953㎡)	1,000,738,615	132,794,198	1,133,532,813	7,037,320
			9,004,793,427	28,908,630	9,033,702,057	1,520,790
춘천시	주식회사 ■■■	춘천시 - 외 65필지 (203,675㎡)	24,180,776,000	2,697,078,350	26,877,854,350	141,741,090
계				13,071,088,919		710,625,200

주: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취득세 등 계산식: 취득세[누락 차입금 이자 × 법정세율(4%,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농어촌특별세[누락 차입금 이자 × 2% × 법정세율(1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지방교육세[누락
 차입금이자 × (취득세 법정세율-2%) × 법정세율(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가산세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ㄱ 공공주택지구 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으로 취득세 등 부족 징수 현황

(단위: 원)

당초 신고 과세표준	부담금 누락 내역				정당한 과세표준	
	계	생태계보전협력금 ²⁾	상수도원인자부담금 ³⁾	하수처리시설원인자 부담금(1~15차, 준주택) ⁴⁾		
2,173,623,596,121	226,408,206,930	1,000,000,000	50,963,000,000	174,445,206,930	2,400,031,803,051	
누락 과세표준 ¹⁾	세율	감면규정	부족 징수 세액			
			계	취득세 ⁵⁾	농어촌특별세 ⁶⁾	가산세
13,266,843,688	취득세 - 2% 농어촌특별세 -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6조 제1항 [75%~20%]	235,339,400	138,305,790	13,830,390	83,203,220

주: 1. 누락 과세표준은 취득면적에 대한 총사업면적(4,954,735㎡) 비율을 각각 안분하여 산정

2. 생태계보전협력금(「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생태계훼손면적×단위면적당부과금액(300원/㎡)×지역계수
3. 상수도원인자부담금(「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4. 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제2항): 하수발생량 × 단위단가(원/㎡/일), 단위단가 =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일)] × [1+(공공하수도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100)ⁿ]
5.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취득세 계산식: 누락 과세표준 × 법정세율(2%,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6.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농어촌특별세 계산식: 누락 과세표준 × 2% × 법정세율(1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자료: 하남시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4]

개인 건축주 취득세 등 부족 징수 현황

(단위: 원)

연번	자치구	납세자명	시공자명	취득세 신고 시 도급 금액(A)	장부상 도급 금액(B)	신고 누락액 (C=B-A)	취득세 등 부족 징수 금액		
							본세	가산세	합계
1	강남구	S	▲▲건설(주)	5,580,000,000	7,326,000,000	1,746,000,000	55,173,600	19,752,550	74,926,150
2	강남구	-	-건설(주)	6,945,000,000	7,536,000,000	591,000,000	18,675,600	5,750,350	24,425,950
3	강남구	-	-엔지니어링(주)	5,820,000,000	6,159,636,363	339,636,363	28,102,020	6,214,150	34,316,170
4	강남구	- 외 1명	-건설(주)	10,904,000,000	10,944,000,000	40,000,000	1,264,000	134,360	1,398,360
5	강남구	-	(주)-	4,730,000,000	5,190,000,000	460,000,000	14,536,000	3,987,320	18,523,320
6	강남구	- 외 1명	(주)-산업	4,400,000,000	4,550,000,000	150,000,000	4,740,000	2,207,960	6,947,960
7	강남구	-	-건설(주)	3,589,400,000	3,660,800,000	71,400,000	2,256,240	1,002,670	3,258,910
8	강남구	-	-건설(주)	4,100,000,000	4,600,000,000	500,000,000	15,800,000	4,300,880	20,100,880
9	강남구	-	(주)-	4,103,000,000	4,353,000,000	250,000,000	7,900,000	3,593,770	11,493,770
10	강남구	- 외 3명	-건설(주)	3,385,000,000	3,423,000,000	38,000,000	1,200,800	387,010	1,587,810
11	강남구	-	-개발(주)	3,200,000,000	3,340,000,000	140,000,000	4,424,000	730,430	5,154,430
12	강남구	-	-개발(주)	2,970,000,000	3,080,000,000	110,000,000	3,476,000	1,311,160	4,787,160
13	강남구	- 외 1명	-건설(주)	2,900,000,000	3,125,000,000	225,000,000	7,110,000	1,233,630	8,343,630
14	강남구	-	-건설(주)	2,770,000,000	3,067,401,894	297,401,894	9,397,890	4,413,300	13,811,190
15	강남구	- 외 3명	(주)-	2,380,000,000	2,396,000,000	16,000,000	505,600	214,970	720,570

연번	자치구	납세자 명	시공자명	취득세 신고 시 도급 금액(A)	장부상 도급 금액(B)	신고 누락액 (C=B-A)	취득세 등 부족 징수 금액		
							본세	가산세	합계
16	강남구	외 2명	-건설(주)	1,734,000,000	2,024,000,000	290,000,000	9,164,000	2,013,390	11,177,390
17	강남구	-	(구, -)	2,111,854,545	2,219,180,993	107,326,448	3,391,510	830,580	4,222,090
	강남구 소계					5,371,764,705	187,117,260	58,078,480	245,195,740
18	서초구	-	-종합건설(주)	1,792,727,270	2,662,727,270	870,000,000	27,492,000	8,481,480	35,973,480
19	서초구	-	-종합건설	1,000,000,000	1,300,000,000	300,000,000	8,880,000	2,283,880	11,163,880
20	서초구	-	-종합건설	2,272,727,273	2,443,530,243	170,802,970	1,354,560	690,140	2,044,700
21	서초구	-	-	1,375,000,000	1,408,390,911	33,390,911	788,020	80,190	868,210
22	서초구	-	-종합건설(주)	2,222,310,976	2,299,000,000	76,689,024	2,394,860	1,145,290	3,540,150
23	서초구	-	(주)-	1,450,000,000	1,523,000,000	73,000,000	2,160,800	875,320	3,036,120
24	서초구	-	-건설(주)	2,320,950,000	2,493,950,000	173,000,000	5,466,800	3,042,850	8,509,650
25	서초구	-	-건설(주)	1,159,975,760	1,229,835,760	69,860,000	2,207,570	461,820	2,669,390
26	서초구	-	-종합건설(주)	950,000,000	1,010,000,000	60,000,000	1,776,000	353,940	2,129,940
27	서초구	-	-종합건설(주)	2,970,000,000	2,972,545,000	2,545,000	80,420	32,990	113,410
28	서초구	-	-건설(주)	1,340,000,000	1,377,999,995	37,999,995	1,200,770	270,280	1,471,050
29	서초구	-	(주)-건설	1,084,000,000	1,196,272,737	112,272,737	3,546,350	1,288,880	4,835,230
30	서초구	-	-건설(주)	1,105,336,178	1,159,740,062	54,403,884	1,638,050	391,150	2,029,200
31	서초구	-	-건설(주)	1,960,000,000	2,130,000,000	170,000,000	5,372,000	2,650,030	8,022,030

연번	자치구	납세자명	시공자명	취득세 신고 시 도급 금액(A)	장부상 도급 금액(B)	신고 누락액 (C=B-A)	취득세 등 부족 징수 금액		
							본세	가산세	합계
32	서초구	-	-건설-(주)	1,063,455,873	1,192,000,000	128,544,127	3,833,560	890,090	4,723,650
33	서초구	-	-건설(주)	946,907,549	1,056,109,245	109,201,696	3,450,760	557,310	4,008,070
34	서초구	-	(주) 종합건설	2,132,000,000	2,199,966,240	67,966,240	2,011,790	692,440	2,704,230
35	서초구	-	-건설(주)	1,810,000,000	1,910,000,000	100,000,000	1,248,400	175,500	1,423,900
36	서초구	-	(주)지-건설	1,143,246,762	1,150,000,000	6,753,238	199,890	79,700	279,590
37	서초구	-	(주) 건설	1,658,225,976	2,148,000,000	489,774,024	14,497,300	4,407,090	18,904,390
38	서초구	-	(주) 종합건설	2,215,000,000	2,584,100,000	369,100,000	10,925,360	2,901,710	13,827,070
39	서초구	-	-종합건설(주)	2,590,000,000	2,717,375,430	127,375,430	3,770,310	700,490	4,470,800
40	서초구	-	(주) 종합건설	1,126,113,931	1,165,539,598	39,425,667	1,223,080	175,310	1,398,390
41	서초구	-	-종합건설(주)	1,380,000,000	1,398,430,200	18,430,200	566,410	84,030	650,440
42	서초구	-	-종합건설(주)	2,250,000,000	2,328,536,250	78,536,250	976,800	135,760	1,112,560
43	서초구	-	-종합건설(주)	1,191,379,990	1,205,000,000	13,620,010	430,390	145,930	576,320
44	서초구	-	(주) 종합건설	1,045,233,171	1,081,193,637	35,960,466	1,083,150	145,830	1,228,980
45	서초구	-	-종합건설(주)	1,180,000,000	1,380,000,000	200,000,000	5,920,000	1,881,340	7,801,340
46	서초구	-	-종합건설(주)	4,910,000,000	5,180,000,000	270,000,000	8,532,000	3,771,190	12,303,190
47	서초구	-	(주)	1,762,000,000	1,968,000,000	206,000,000	6,509,600	2,324,610	8,834,210
	서초구 소계					4,464,651,869	129,537,000	41,116,570	170,653,570

연번	자치구	납세자 명	시공자명	취득세 신고 시 도급 금액(A)	장부상 도급 금액(B)	신고 누락액 (C=B-A)	취득세 등 부족 징수 금액		
							본세	가산세	합계
48	송파구	- 외 1명	-건설(주)	4,000,000,000	4,935,311,985	935,311,985	28,093,960	6,394,680	34,488,640
49	송파구	-	(주)-	3,880,000,000	4,306,000,000	426,000,000	13,461,600	3,805,680	17,267,280
50	송파구	-	(주)-건설	3,100,000,000	3,650,000,000	550,000,000	16,280,000	4,870,880	21,150,880
51	송파구	-	-종합건설	2,680,000,000	2,945,900,000	265,900,000	8,209,510	2,493,120	10,702,630
52	송파구	-	-산업개발(주)	2,420,000,000	2,492,000,000	72,000,000	2,275,200	948,310	3,223,510
53	송파구	-외 2명	(주)-종합건설	1,808,000,000	1,892,500,000	84,500,000	2,634,080	663,310	3,297,390
54	송파구	-	-종합건설	2,045,000,000	2,104,303,088	59,303,088	1,352,290	828,680	2,180,970
55	송파구	-	(주)-건설	1,340,000,000	1,386,000,000	46,000,000	1,453,600	169,780	1,623,380
56	송파구	-	(주)-건설	1,096,136,363	1,475,177,274	379,040,911	11,783,220	3,040,870	14,824,090
57	송파구	-	(주)-건설-	1,200,000,000	1,330,000,000	130,000,000	3,848,000	1,295,960	5,143,960
	송파구 소계					2,948,055,984	89,391,460	24,511,270	113,902,730
58	영등포구	- 외 3명	(주)-종합건설	5,045,454,545	6,170,270,000	1,124,815,455	35,544,160	8,673,030	44,217,190
59	영등포구	-	(주)-물산 [-종합개발(주)]	2,929,900,000	2,932,700,000	2,800,000	88,480	40,760	129,240
60	영등포구	-	-종합건설(주) → -종합건설(주)	1,855,000,000	2,250,000,000	395,000,000	12,121,630	4,549,740	16,671,370
61	영등포구	-	(주)-종합건설	5,800,000,000	6,250,000,000	450,000,000	9,264,990	2,419,140	11,684,130
62	영등포구	-	-종합건설 외 2 개	946,363,620	997,727,727	51,364,107	1,573,100	534,580	2,107,680
63	영등포구	-	-종합 건설(주)	3,047,885,613	3,331,409,856	283,524,243	8,959,340	3,565,940	12,525,280
				1,252,114,387	1,368,590,144	116,475,757	517,140	212,010	729,150
64	영등포구	-	-종합건설(주)	1,690,909,090	1,800,000,000	109,090,910	3,322,760	1,047,070	4,369,830

연번	자치구	납세자 명	시공자명	취득세 신고 시 도급 금액(A)	장부상 도급 금액(B)	신고 누락액 (C=B-A)	취득세 등 부족 징수 금액		
							본세	가산세	합계
65	영등포구	-	-종합건설(주)	920,000,000	955,284,087	35,284,087	1,064,560	336,700	1,401,260
66	영등포구	-	(주) 종합건설	2,915,000,000	3,114,981,818	199,981,818	6,309,940	1,702,450	8,012,390
67	영등포구	-	-건설(주)	1,602,290,000	1,613,290,000	11,000,000	347,600	86,900	434,500
68	영등포구	-	-건설(주)	2,456,000,000	2,556,000,000	100,000,000	3,159,970	1,562,590	4,722,560
69	영등포구	-	(주)-	2,727,272,727	2,858,515,543	131,242,816	4,026,310	950,860	4,977,170
70	영등포구	-	(주) 산업개발 →(주)	1,200,000,000	1,240,000,000	40,000,000	1,571,200	355,810	1,927,010
71	영등포구	-	-건설	2,200,000,000	3,200,000,000	1,000,000,000	31,015,600	7,108,060	38,123,660
72	영등포구	-	-건설	1,400,000,000	1,430,584,117	30,584,117	952,210	203,310	1,155,520
73	영등포구	-	(주) 건설	1,080,000,000	1,418,000,000	338,000,000	10,161,510	2,095,650	12,257,160
74	영등포구	-	-종합건설(주)	1,176,800,000	1,237,505,000	60,705,000	1,828,110	331,190	2,159,300
75	영등포구	-	(주) 건설	2,670,000,000	2,870,000,000	200,000,000	5,924,370	1,068,300	6,992,670
76	영등포구	-	-건설(주)	3,030,000,000	3,145,799,999	115,799,999	3,659,250	617,330	4,276,580
77	영등포구	- 외 3명	(주) 건설	700,000,000	883,665,000	183,665,000	3,700,500	615,540	4,316,040
78	영등포구	- 외 1명	-종합건설	4,270,000,000	4,500,000,000	230,000,000	7,268,000	964,500	8,232,500
79	영등포구	- 외 4명	(주)-	15,491,072,727	15,644,924,545	153,851,818	4,861,710	615,990	5,477,700
80	영등포구	-	(주) 종합건설	3,650,000,000	3,657,349,884	7,349,884	226,060	28,620	254,680
81	영등포구	-	(주) 종합건설	1,400,000,000	1,855,000,000	455,000,000	13,962,140	2,874,700	16,836,840
	영등포구 소계					5,825,535,011	171,430,640	42,560,770	213,991,410

연번	자치구	납세자명	시공자명	취득세 신고 시 도급 금액(A)	장부상 도급 금액(B)	신고 누락액 (C=B-A)	취득세 등 부족 징수 금액		
							본세	가산세	합계
82	종로구	-	(주) 종합건설	2,076,000,000	4,700,000,000	2,624,000,000	82,918,400	39,237,610	122,156,010
83	종로구	-	-산업개발(주)	3,600,000,000	3,800,000,000	200,000,000	6,320,000	1,104,010	7,424,010
84	종로구	-	(주)-	2,500,000,000	2,680,000,000	180,000,000	5,467,240	1,156,770	6,624,010
85	종로구	-	(주) 종합건설	2,210,000,000	2,246,115,790	36,115,790	1,069,020	214,320	1,283,340
86	종로구	-	-산업(주)	8,100,000,000	8,700,000,000	600,000,000	16,386,000	8,950,430	25,336,430
87	종로구	-	(주)-	1,506,000,000	1,534,981,824	28,981,824	915,820	289,490	1,205,310
88	종로구	-	(주)-	1,348,500,000	1,365,704,545	17,204,545	543,640	193,860	737,500
89	종로구	-	(주) 건설	1,172,727,273	1,186,363,636	13,636,363	430,890	65,570	496,460
90	종로구	-	-건설(주)	1,058,000,000	1,180,000,000	122,000,000	3,855,200	443,370	4,298,570
91	종로구	-	-종합건설(주)	805,000,000	878,330,000	73,330,000	2,298,260	916,100	3,214,360
	종로구 소계					3,895,268,522	120,204,470	52,571,530	172,776,000
계						22,505,276,091	697,680,830	218,838,620	916,519,450

주: 도급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주식회사 ▶▶ 추가납부 세액

○ 누락 과세표준: 17,298,086,871원

○ 주식회사 ▶▶ 추가 납부 세액 산출

(단위: 원)

세목		취득세			지방교육세	
		본세 (과표×2.8%)	신고불성실 가산세 (취득세액×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47일×3/10,000)	본세 (과표×0.8%×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47일×3/10,000)
계	583,038,220	484,346,430	48,434,640	21,359,670	27,676,930	1,220,55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제출자료 재구성